

재난대응절차 행동수칙

1 황사와 미세먼지

1. 목적

눈, 코, 기관지 질환, 심한 경우 심장과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.

2. 교사/직원 역할

- 황사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,
 - 학생들에게 황사 발생 대비 목, 코, 눈 보호를 위한 다음의 대처요령을 교육한다.
 - 황사 발생 중 실외·야외학습은 실내 학습활동으로 검토·조정한다.
- 황사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, 황사 관련 질환자를 파악하고 사고지휘관에게 보고하며, 특별관리(조기귀가, 진료 등) 결정시 보건교사와 협조하여 이를 실행한다.
- 황사 종료 후 실내·외(급식소)를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를 제거한다.

목 보호 대처행동

- 물 적신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천천히 깊게 호흡한다
- 창문을 닫고 물수건을 넣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한다
- 양치질(헹바닥, 잇몸포함)을 하고, 깨끗한 물이나 가글로 목구멍을 헹군다

코 보호 대처행동

- 코를 엇박자로 눌러 콧물을 빼낸다
- 콧구멍을 한 쪽씩 막고 번갈아 킁다
- 깨끗한 물로 콧속을 세척한다

코 보호 대처행동

-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겨 바이러스에 감염되기 쉬우므로 절대 비비지 말고 자라리 눈물이 흐르게 한다
- 렌즈를 끼던 사람은 안경으로 바꾸어 착용한다
- 눈을 편안하게 쉬게 해준다
- 두 손을 비벼서 열이 나게 한 후 두 눈에 갖다 대어 눈의 피로를 풀어준다

2 화재

1. 목적

화재 또는 연기를 발견한 사람은 화재경보기를 작동시키고, 교장에게 이를 보고하거나 또는 응급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자가 발생했을 때 119에 즉시 신고하고, 비상사고지휘관(소방관)이 도착하면 화재현장에서 이들의 지시를 따르고 협력한다.

2. 교사/직원 역할

- 출석부, 비상배낭 그리고 사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챙기고, 학생들을 가능한 빨리 그리고 차분하게 건물 밖의 지정된 집합장소로 이동시킨다.
- 지정된 경로가 막혔다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대피경로를 활용한다.
- 이동에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탈출을 돕거나 또는 도와줄 사람을 지정한다.
-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이나 사람이 없음을 확인한 후, 조명을 끄고 교실 문을 닫는다.
- 집합장소에 학생들이 모두 모였는지를 확인한다. 실종자,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학교 사고지휘관/학교장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린다.
- 학생들이 집합장소에 모여 있도록 지도하면서 추가적인 지시를 기다린다.
- 모든 것이 안전해졌다는 신호가 올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도록 한다.
- 소방서에서 안전을 확인받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건물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한다.

화재발생시 대피방법

- '불이야'하고 큰소리로 외치거나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.
-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로 대피가 불가능하면 옥상으로 대피한다.
-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
-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얼굴과 몸을 감싼다.
- 문을 열기 전 손잡이가 뜨겁지 않으면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간다.
- 손잡이가 뜨거우면 밖으로 나가지 말고, 연기가 문틈으로 스며들지 못하도록 젖은 옷이나 이불로 막은 채 창밖으로 옷가지 등을 흔들어 구조를 요청합니다.

소화기 사용요령

 <p>1.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가져간다.</p>	 <p>2. 소화기 손잡이의 안전핀을 뽑는다.</p>
 <p>3. 바람을 등지고 서서 노즐을 화점에 향하고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는다.</p>	 <p>4. 불길주위에서부터 빗자루로 쓸 듯 분말을 골고루 방사한다.</p>

화재시 119 신고요령

-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·명료하게 설명합니다.(우리 집 주방에 불났어요. 2층 집이에요).
- 주소를 알려 줍니다(○○구 ○○동 ○○○번지예요 / ○○초등학교 뒤 쪽이에요).
-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.
- *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,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.

1. 목적

학교안전사고 등에 의한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한 학교 응급의료체계의 실현과 이를 통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한다.

2. 교사/직원 역할

- 즉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한다. 우선, 자기가 현장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.
-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건교사/학교장에게 이를 알린다.
- 부상이나 질환의 심각성을 파악한다.
- 즉각적으로 119에 전화를 걸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119에 전화하도록 한다. 학교명, 주소,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한 장소(건물명, 층수, 교실번호), 질환 또는 부상의 형태, 환자의 나이 등에 관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해놓는다.
- 환자의 신체에서 흘러나오는 피로 인해 감염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한다.
- 응급의료인력(응급구조요원, 간호교사, 해당 응급처치 자격소지자 등)의 도움이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이 받았던 응급처치 훈련의 수준에 맞는 응급처치를 실행한다.
- 부상자의 호흡이 없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동제세동기(AED, 심장충격기)를 가져오도록 말하고, AED가 도착하여 사용할 수 있기까지 심폐소생술(CPR)을 실시한다. 만일 AED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, 이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에게 연락하여 사용법에 대한 지시를 들어가며 AED를 사용한다.

참고

심폐소생술 훈련

심폐소생술 절차		실습 훈련 내용
	① 심정지 확인 (반응확인)	○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"괜찮으세요?"라고 함
	② 119신고 및 심장충격기 요청	○ 주변 사람 중 특정인을 지목하여 119에 전화 및 자동심장충격기 요청 (주위 사람이 없을 때는 직접 신고)
	③ 가슴압박 30회	○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누굴이 닿지 않도록 함 ○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압박 · 이완 * 분당 최소 100회 속도로 30회 흉부 압박
	④ 인공호흡 2회	○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개방 ○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줌 * 모형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 공기 공급 ※ 훈련 시 소독 등 감염 예방 철저
	⑤ 가슴압박(30회) 및 인공호흡(2회) 반복	○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 ○ 구조자가 2명인 경우에는 30:2로 1인은 흉부압박, 다른 1인은 인공호흡 * 5주기마다(매 2분마다) 교대하여 실시

4

폭염

1. 목적

통상 30°C 이상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는 현상인 폭염에 의한 열부종, 열사병, 열경련, 열실신, 열탈진 등의 온열질환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.

2. 교사/직원 역할

○ 폭염주의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,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.

- 폭염대비 학생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한다.
-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의 실외·야외활동을 자제시킨다.
-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그늘이나 체육관에서 실시한다.

○ 폭염경보 발령을 통보받은 경우, 다음의 사항을 실행한다.

-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학생들의 실외·야외활동을 금지시킨다.
- 체육활동 등의 실외수업은 실내수업으로 대체한다.

○ 폭염에 의한 환자 발견 시 생명이 위험한 긴급 상황임을 인식하고, 119 연락 및 현장에서 몸을 차게 식히는 등 다음과 같은 응급조치를 한다.

- 시원한 장소(통풍 잘되는 그늘, 에어컨이 작동되는 실내 등)로 옮긴다.
- 옷을 벗긴 후 노출된 피부에 물을 뿌리고, 부채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차게 식힌다. 만일 얼음주머니가 있을 경우 이마, 목, 겨드랑이 등에 대어 몸을 식힌다.

- 환자의 응답이 명료하고 의식이 뚜렷한 경우
*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(스포츠 드링크)를 먹인다.

* 땀을 많이 흘렸을 경우 염분(식염수 → 물 1ℓ에 소금 1~2g)을 섭취케 한다.

* 필요시 119에 연락한다.

- 환자의 응답이 불분명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

* 119에 연락한다.

* 불렀을 때나 자극을 가했을 때 반응이 이상하거나 응답이 없거나 토하는 증상을 보이면 옷을 벗기고 몸을 식히며 수분섭취를 금지한 후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킨다.

5 태풍·집중호우

1. 목적

폭풍우를 동반하는 태풍과 짧은 시간 동안 특정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호우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보호한다.

2. 교사/직원 역할

○ 태풍·집중호우 주의 또는 경보 발령시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.

- 저지대나 상습 침수지역은 우회하여 등교한다.
-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시설은 출입을 금지한다.
- 공사장, 하천, 배수로 주위는 위험하므로 접근하지 않는다(익사위험).
- 전신주, 가로등, 신호등, 고압전선 근처는 접근하지 않는다(감전위험).
- 벼락이 치면 최대한 몸을 낮추고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한다.
- 가급적 혼자서 다니지 말고 친구, 선배 등과 함께 동행한다.
- 강풍에 날리는 간판 등 물건들을 조심해야 한다.
- 호우로 걷기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안전한 건물로 피한다.
- 학교 내 붕괴우려지역(공사장 주변, 옹벽, 경사지 등)에 접근하지 않는다.

○ 강풍에 대비하여 유리창, 출입문을 꼭 닫는다.

○ 물이 새는 곳이나 파손된 곳을 발견하면 선생님께 알리도록 학생들을 지도한다.

3) 시설관리자

○ 태풍·집중호우로 인한 학교 시설물의 침수, 파손, 붕괴 가능성을 수시로 점검한다.

○ 학교장/사고지휘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들을 실행한다.

6 식중독

1. 목적

식품섭취로 인해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에 의한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인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한다.

2. 대응절차

1) 대응 1단계 : 식중독 발생 감시단계

○ 담임교사의 병결 학생 수 파악 및 보건교사의 모니터링(보건실 이용자 수, 집단환자 발병 등) 등 학교단위 감시체계 운영을 통해 식중독 발생 여부 감시

2) 대응 2단계 : 식중독 의심환자 발견 단계

○ 학교장은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증세 환자가 2인 이상 동시에 발생한 경우, 인지 즉시 관할 교육청과 시·군·구(보건소)에 신고

○ 학교장 주재 대책회의와 보건소 등 방역당국 협조를 통해 초동단계 신속 대응

3) 대응 3단계 : 역학조사 단계(신고 당일)

○ 역학조사 전 사전조치 사항을 확인한다.

- 의심 환자에게 약물·급식·급수 중단, 의심환자·급식관계자 귀가 보류, 현장 보존

○ 학교장 책임 하에 「학교 식중독 대책반」을 가동한다.

- 응급환자 이송, 학사행정 조치, 언론대응*, 치료 및 보상대책을 마련한다.

* 식중독 발생상황은 정확하고 일관된 정보제공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언론대응을 자제하고 지자체, 지방식약청 등 방역당국에 문의토록 안내

- 급식중단 여부 결정 및 후속조치(가정통신문 등)를 실행한다.

- 관계기관(보건소, 교육청 등)과 정보를 공유한다.

○ 역학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협조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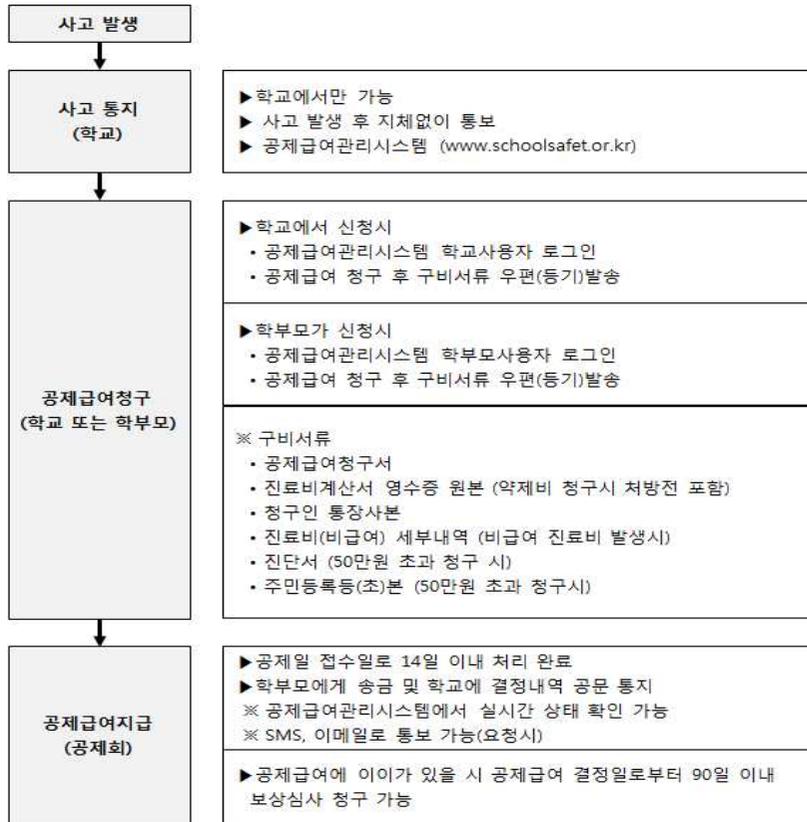
- 학생 지도, 가검물 채취(환자, 급식 종사자, 먹는 물, 보존식, 조리기구 등)

4) 대응 3단계 : 환자 발생 익일 이후 ~ 환자 완치단계

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·교직원·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피해보상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※ 교육활동이란 학교의 교육과정(교육계획)에 따른 학교장 관리·감독 하의 교내·외 교과활동, 학교장이 인정하는 행사(대회) 참가활동, 등·하교, 현장실습, 이동시간 중의 활동 등을 말함

<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사고통지 및 청구절차>



학교 안전사고 대비 책임

- ① 사전 교육 및 하교 지도
- ② 신속한 구호활동 후 사건이 심각하다면 병원 동행(단, 학급 활동 지시 및 대리인 지정)
- ③ 6하 원칙에 의해 사고 경위 파악 일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고

사고발생통지서

■ 학교 현황

학교	학교 (전화 : _____, FAX : _____)				
주소 :					
작성자	성명		직위		연락처
확인자	교감		학교장		

■ 사고자 인적사항

이름		주민등록번호	-
성별	()남, ()여	학교 또는 직업	

■ 사고관련자(없을 경우 생략가능)

이름	성별	학년/반	비고

■ 사고 현황

사고일시	년 월 일 요일 시 분			
사고시간		사고장소		
사고정도		사고원인		
사고 내용	사고구분	()대인사고, ()대물사고 ()급식과태료		
	대인사고	사고형태		사고부위
	대물사고	피해내역		추정손해액 원
	급식과태료	과태료 부과사유		부과액 원

■ 사고 개요(육하원칙으로 작성)

■ 지도 내용 및 안전교육 내용

■ 사고발생 후 긴급 조치 내용

■ 기타사항

※ 1. 본 사고통지서는 내부결재를 한 다음 원본은 보관(향후 공제급여청구 시 결재본의 사본 제출)하고, 전자파일은 반드시 본회 홈페이지(www.ssif.or.kr)에 로그인하여 중앙회공제사업>사고발생통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. 사고현황과 사고개요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은 붙임 참조

20 년 월 일 학교장 인

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귀하

< 작성요령 >

- ① 사고시간 : 당해 사고 발생 시 활동 내용 예) 휴식시간 중, 야외 체험활동 중 등
- ② 사고장소 : 구체적인 사고발생 장소
- ③ 사고정도 : 상, 중, 하 중 택일
- ④ 사고원인 :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

.자기 관련 사고 : 학생부주의, 교칙위반, 교사의 지도감독을 위반
.타인 관련 사고 : 교사의 과실 또는 지도감독 소홀, 교사의 체벌에 의한 사고, 고의성 없는 상대방
.상호 관련 사고 : 운동.경기, 놀이.장난, 원인불명 사고, 시설물하자 사고, 기타

⑤ 사고내용 :

○ 사고구분 : 대인사고, 대물사고, 급식과태료 중 택일

○ 대인사고

- 사고형태 : 다음 분류에 따라 하위항목 중 어느 하나를 택일

사망, 충돌/부딪힘, 미끄러짐/쓸림, 걸러 넘어짐, 끼임, 절단/베임, 찢림, 추락, 폭발.화상, 감전, 익수, 자연재해, 기타

- 사고부위 : 다음 항목 중 택일

머리, 눈, 코, 귀, 입, 치아, 안면, 목, 팔, 팔목, 손,손가락, 가슴.등, 복부, 허리, 엉덩이, 허벅지, 종아리, 발목, 발.발가락, 비뇨 생식기, 신경계통, 무릎, 손목, 어깨, 팔꿈치, 발뒤꿈치, 고관절, 기타

○ 대물사고

- 피해 내역 : 파손물품, 파손정도 등을 상세히 기재

- 추정손해액 : 추정되는 손해금액을 기재

○ 급식과태료

- 과태료 부과 사유 : 관련 법규 위반 사항 기재(예) 식품위생법 ○○조 위반 등)

- 과태료 부과액 : 학교장에게 부과된 과태료 금액 기재

⑥ 사고개요(작성례)

20○○년 ○○월 ○○일 ○요일 ○○시 ○○분경 체육시간에 학생 ○○○을 비롯한 10여명의 학생들이 야구를 하던 중 학생 ○○○이 친 공이 담장을 넘어가 지나가던 행인 △△△의 머리에 맞은 사고 지나가던 행인 △△△은 야구공에 머리를 가격당하여 넘어지면서 안경이 부서지고 두부에 가벼운 충격이 가해졌고 얼굴에는 3cm 가량의 열상을 입었음

사고 후 체육교사 ○○○이 행인 △△△을 데리고 인근 정형외과로 가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약을 처방하였음